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제주교도소를 증축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8명, 7급 13명, 8급 37명, 9급 37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11. ~ 10.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후단 중 “232명”을 “233명”으로 한다.

별표 1의 대구지방법교정청의 관할교도소 등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상주교도소란 다음에 거창구치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창구치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	------------------

별표 7 중 총계 “22,779”를 “22,882”로 하고, 일반직 계 “22,760”을 “22,86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555”를 “22,657”로, 전문경력관 “174”를 “17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232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u>233명</u>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779</u>	<u>22,882</u>	+103
일반직 계	<u>22,760</u>	<u>22,863</u>	+10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555</u>	<u>22,657</u>	+102
전문경력관	<u>174</u>	<u>175</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